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안내

관세청에서는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개정사항

1.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 (제4조, 제5조)
2.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에 의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 (제6조)
3.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 (별표1)
4.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II.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제12조제3항)

협업부처	대상물품	안전성 관련 법령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환경부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외래생물 야생동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류(개인전자상거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
	인체용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고용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산업안전보건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등	전파법	"
산림청	우드펠릿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탄류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수출
	(추가) 삼상유도전동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물질 및 그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수입

III.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당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황혜진 주무관 (7828)
- 제출기한 : 2021. 9. 24.
- 제출방법 : E-mail(liebao83@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1. (입안계획서)「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붙임2] 2. (신구대조표)「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붙임3] 3. (개정전문)「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전소연 관세전문가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